

날짜 : 9월 11일(수)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신 :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 노동정책연구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전국목회자정의 평화실천협의회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796-8364)

분량 : 총 6 쪽

보 도 자 료

교사의 노동3권 보장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 국민의 71.3% 교사의 단결권 이상의 노동3권 보장에 찬성 -

1. 바쁜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상기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기본 입장을 밝힌데 이어 9월 7일 오전 10시 대표자 모임을 갖고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3. 준비위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6.7%가 노개위의 노동법개정작업을 모르고 있는 등 노개위가 국민적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첫사업으로 최근 노사관계개혁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된 교사의 노동3권보장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시행하여 하였다.
4. 이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7-9.8 이틀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0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내용은 별첨자료와 같다.

교사의 노동3권 보장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법개정안 합의통과 여부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교원에게 단결권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1.3%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교조 결성 이후 몇차례의 국민여론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정부나 노개위 일부에서 '국민정서'를 앞세워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였나를 잘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노개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1.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

국민들은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16.0%,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 48.3%, 노동 2권만 인정해야 한다 6.8%, 단결권만 인정해야 한다 2.2%로 전 국민의 7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교사의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1.3%에 불과했다.

완전한 노동3권 또는 단체행동을 제한한 형태의 3권 보장은 연령이 적을수록 많았다.(20대 84.4%, 30대 70.4%, 40대 59.9%, 50대 이상 37.5%)

2. 교사의 노동2권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찬반

국민들은 만약 노동 2권만 인정하는 법안이 제출될 경우 64.9%가 찬성하겠으며, 23.7%는 반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의견은 여자(66.1%)가 남자(63.5%)보다, 30대(70.4%), 20대(70.0%)에서, 생산/기술직(72.7%)층에서 높았다.

3. 전교조의 법적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

국민들은 현재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전교조 합법화 여부에 대해 68.9%가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21.8%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 법적 인정이 3배이상이나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실시된 국민여론조사<별첨 1>보다 높은 수치로 그동안 전교조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의 향상과 함께, 전교조를 지지하던 20,30대층이 자연스럽게 30,40대가 됨으로써 지지연령층의 폭을 넓힌 결과로 보인다. 또한 7.15 노개위 보고이후 개혁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4. 교사노조 허용시 교육개혁 기여도에 대한 예상

교사에게 노동조합을 허용할 경우 교육개혁 기여도에 대해 52.1%(매우 기여 10.6%+다소기여 41.5%)가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38.4%는 기여하지 못할 것(다소 기여하지 못할 것 31.4%+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 7.0%)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전교조에 대한 인지도

국민들중 전교조를 알고 있는 인지자는 7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알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26.0%였다.

6.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작업에 대한 인지도

노개위에서 노동법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나는 물음에 33.3%만이 알고 있고 66.7%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개위의 논의과정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7. 김영삼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만족도

국민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해 16.0%(매우 만족:2.7%+다소만족13.3%)만이 만족하고 있는 반면, 29.8%가 불만(다소 불만20.4%+매우불만 9.4%)인 것으로 나타나 불만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는 층도 49.2%로 나타났다.

<별첨 2> 교원노조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주이

* 89년 3월 국회문교공보위의 교원노조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학부모들은 노동3권 보장(24.1%), 단체행동권 유보(29.6%)로 응답해 교원노조 설립에 긍정적 의견(53.7%)이 부정적 의견 36.4%(소극반대 24.3%, 적극반대 12.1%)보다 많았다.

* 92년 9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전교조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전교조의 법적 인정 여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4.2%, 전교조 인지자의 61.8%가 법적 인정에 찬성하였고 반대의견은 전체응답자의 28.4%, 전교조 인지자의 30.5%로 나타나 반대의견보다는 찬성의견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 93년 2월 한국교육연구소, 한길리서치 공동조사

전교조의 법적 인정 여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1.2%가 법적인정에 찬성하였고 5.7%가 '조건부 인정'으로 응답해 국민의 56.9%가 전교조 허용에 대해 찬성을 하였다.

반면 응답자의 29.4%가 반대하여 찬성의견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별첨 2>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교사의 노동기본권 인정여부와 전교조 합법화 여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 조사내용

1.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수준
2. 교사의 노동2권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찬반
3. 노동법 개정에서 전교조 합법화 여부
4. 교사노조 허용시 교육개혁 기여도에 대한 예상
5. 전교조에 대한 인지도
6. 노개위에 대한 인지도
7. 김영삼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만족도

3. 조사설계

1. 표본설계(Sample Design)

- 1) 모집단 : 1996년 9월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20세 이상 전 국민
- 2) 조사기간 : 96. 9. 7 ~ 9. 8.
- 3) 표본크기 : 1,003명
- 4) 표본추출방법 : 지역/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 5)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
- 6)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3.1\%$

4.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 료 처 리

수집된 자료는 EDITING $\Rightarrow$ CODING/PUNCHING $\Rightarrow$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2. 분 석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분석을 하여 제표를 만들었다.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수

① 성 ② 연령 ③ 학력 ④ 직업 ⑤ 취학자녀 ⑥ 지역(광역)

6. 표본의 특성

		사 례 수	백 분 율
☐ 전	체	1003	100.0%
☐ 성	별		
남	자	493	49.2%
여	자	510	50.8%

□ 연 령 별		
20 대	299	29.8%
30 대	270	26.9%
40 대	178	17.7%
50 대 이 상	257	25.6%
□ 학 력 별		
중 졸 이 하	255	25.4%
고 졸	402	40.1%
전 문 대 졸	67	6.7%
대 졸 이 상	280	27.9%
□ 직 업 별		
농/임/어 업	88	8.8%
자영업/ 사업	104	10.4%
생산 / 기술	84	8.4%
사무/ 전문직	149	14.9%
공 무 원	59	5.9%
학 생	79	7.9%
주 부	297	29.6%
서 비 스 업	62	6.2%
무직 / 기타	78	7.8%
□ 취학자녀 별		
학 부 모	371	41.7%
비 학 부 모	520	58.3%
□ 광 역 별		
서 울	249	24.8%
부산/경남 권	174	17.3%
대구/경북 권	121	12.1%
인천/경기 천	183	18.2%
호 남 권	131	13.0%
충 청 권	107	10.7%
강 원 도	39	3.9%

< 설문 문항과 결과표 >

1. 귀하는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 인정해야 한다 16.0%
- ②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행동권을 인정해야 한다 48.3%
- ③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해야 한다 6.8%
- ④ 단결권만 인정해야 한다 2.2%
- ⑤ 지금처럼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11.3%
- ⑥ 노동조합에 대해 모른다 2.9%
- ⑦ 잘 모르겠다 12.6%

2. 일부에서는 교사들에게 노동조합을 인정하되 학생의 수업권 침해를 방지하고 파업을 막기 위해서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허용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법안이 제안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 | | |
|---------|-------|
| ① 찬성한다 | 64.9% |
| ② 반대한다 | 23.7% |
| ③ 잘모르겠다 | 11.4% |

3. 귀하께서는 이번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전교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68.9% |
| ② 법적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 21.8% |
| ③ 잘 모르겠다 | 9.3% |

4. 귀하는 교사의 노동조합이 허용된다면 촌지를 비롯한 교육비리척결과 교육개혁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많이 기여할 것이다 | 10.6% |
| ② 다소 기여할 것이다 | 41.5% |
| ③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 31.4% |
| ④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 7.0% |
| ⑤ 잘모르겠다 | 9.5% |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년째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은 법외 노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전교조에 대해서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 | |
|---------------------|-------|
| ①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 | 74.0% |
| ②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 | 26.0% |

6. 귀하께서는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계, 경영계, 학자 등 공익대표들로 노사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노동법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 | |
|---------|-------|
| ① 알고 있다 | 33.3% |
| ② 모른다 | 66.7% |

7. 귀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만족스럽다 | 2.7% |
| ② 다소 만족스럽다 | 13.3% |
| ③ 그저그렇다 | 49.2% |
| ④ 다소 불만스럽다 | 20.4% |
| ⑤ 매우 불만스럽다 | 9.4% |
| ⑥ 잘 모르겠다 | 5.1% |